

## 수뢰후부정처사

### (2) 공천헌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 ▣ 피고인은 2014. 6. 4. 예정된 '6·4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B를 소개받고, 2014. 3.부터 2014. 5.까지 B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5억 5,500만 원을 교부받음
- ▣ 피고인은 2014. 3.부터 2014. 4.까지 '6·4지방선거'에서 부천시 시의원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C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음

### (3)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 ▣ 피고인은 2013. 2.부터 2016. 6.까지 C를 포함한 18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총 5억 6,600만 원을 교부받음

## 나. 소송경과

- ▣ 제1심 : 징역 7년, 벌금 1억 6,000만 원, 추징 6억 8,200만 원
  - 유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중 5만 유로 부분, 수뢰후부정처사(2,000만 원), 공천헌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6억 2,500만 원),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중 4억 7,100만 원 부분
  - 무죄 내지 이유무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중 5만 유로 초과 부분,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중 9,500만 원 부분
- ▣ 원심 : 징역 7년, 벌금 1억 6,000만 원, 추징 6억 9,200만 원
  - 유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중 5만 유로 부분, 수뢰후부정처사(2,000만 원), 공천헌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6억 2,500만 원),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중 4억 8,100만 원 부분<sup>1)</sup>

1)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서 1,000만원 추가 유죄

- 무죄 내지 이유무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중 5만 유로 초과 부분, 불법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중 8,500만 원 부분

## 2.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 피고인의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이 별건으로 압수된 위법수집증거이고, 그에 터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 역시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 검찰은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주식회사 회장 D가 유사수신행위 관련 수사진행을 막기 위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E에게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었음
- 검찰은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보좌관이 D로부터 뇌물을 받아 E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D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지를 압수하였음
- 이후 검찰은 위 메모지의 내용이 피고인의 불법 정치후원금 수수 내역을 기재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됨

- ▣ 그 밖에 피고인은 A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후원금이고, 정치후원금 중 일부도 받지 않았다고 변호하고, 검찰은 원심 무죄 부분 일부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함

### 나. 판결 결과

- ▣ 쌍방 상고기각 (원심 확정)

### 다. 판단 근거

- ▣ 피고인은 원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 및 그에 터잡아 수집한 증거들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적

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이 별건압수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더라도,
  - 다른 증거들은 위 명단과 무관하게 수집되었거나 위 명단 수집과정에서 절차적 위법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 위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음

### 3. 판결의 의의

- ▣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사항인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무관하게 수집되었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절차적 위법과 인과관계가 단절된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사안
- ▣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